

재난복구의 유형과 사전 계획에 대한 이론적 고찰: 미국의 재난복구를 중심으로

What's the Disaster Recovery? Types and Preimpact Plan of Recovery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Jae-Eun Lee(jeunlee@chungbuk.ac.kr)

요약

이 논문은 재난 복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재난 복구의 유형화와 사전 복구 계획의 설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복구는 재난 발생 직후부터 피해 지역이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 될 때까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복구 단계는 비상대책 기간, 복원 기간, 재건 기간, 개발 재건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구 대책 또한 구호와 재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단기 복구 대책과 재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복구 대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전 복구 계획을 설계 하는 경우, 재난 복구 조직의 명확한 설정과 주요 이해관계자의 확인, 임시 주거지의 위치 선정, 중요한 과업 수행 방식의 사전 결정, 피해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계약자 허가 부여와 모니터링, 소매가격의 통제, 역사적 유물·유적이 있는 장소에서의 복구 작업 수행 방안, 그리고 복구 기간 동안 재난 피해 완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목표 구현 인식이 요구된다.

■ 중심어 : | 재난 복구 | 복구 유형 | 사전 복구 계획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types of recovery activities and the major contents of preimpact recovery plan through theoretical review. Disaster recovery is to provide immediate support during the early recovery period necessary to return vital life support systems to minimum operation levels, and continuing to provide support until the community returns to normal. Disaster researchers distinguished 4 types in recovering from disaster as follows: an emergency period, a restoration period, a reconstruction period, and a developmental reconstruction period. And recovery measures are both short-term and long-term. Short-term measures are relief and rehabilitation and long-term measures include reconstruction. Finally, to design a preimpact recovery plan, we should define a disaster recovery organization that includes major stakeholders, identify the location of temporary housing, determine how to perform essential tasks, address the licensing and monitoring of contractors and retail price controls to ensure victims are not exploited, determine how recovery tasks will be carried out at historical sites, and recognize the recovery period as a unique time to enact policies for hazard mitigation and incorporate this objective into the recovery planning process.

■ keyword : | Disaster Recovery | Recovery Classification | Preimpact Recovery Plan |

* 이 논문은 2011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번호 : #110720-002

심사완료일 : 2011년 09월 07일

접수일자 : 2011년 07월 20일

교신저자 : 이재은, e-mail : jeunlee@chungbuk.ac.kr

I. 서론

재난 복구(recovery)는 재난이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지역이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장기적인 활동 과정인 동시에, 초기 회복기간으로부터 그 지역이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이다. 재난 복구단계의 활동은 피해지역이 원상복구를 하는데 필요한 원조 및 지원활동으로 전형적인 배분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1].

재난 상황이 안정되고 긴급한 인명구조와 재산보호가 수행되고 난 이후에는 재난발생 지역이 재난발생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재난의 복구단계는 단기적인 복구와 장기적인 복구를 통해 피해지역을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2].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재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 계획과 도시 계획 등의 과정을 거쳐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미래에 닥쳐올 재난발생 피해의 영향을 줄이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재난관리의 첫 단계인 예방과 완화 단계에 순환적으로 연결된다[3].

단기적인 복구활동으로는 우선, 단기 복구계획의 수립, 주요 피해상황의 조사 및 평가, 잔해물의 제거, 임시 수용시설의 마련, 작업 등에 의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조사 프로그램의 시행 등이 주요 활동으로 전개된다. 장기적인 복구활동으로는 장기 복구계획의 수립, 재정지원의 확보, 생활편의 시설의 재건, 지역사회 사업 분야의 재건, 재난관리 법령의 정비, 지역사회의 경제 재건 및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재난대응 능력의 보강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구는 주택구구식 피해조사와 임기응변식 복구, 영터리 복구,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방시설, 복구의 지연, 피해 재발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복구의 의의와 활동, 계획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 복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재난 복구

의 유형화와 사전 복구 계획의 설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II. 재난 복구의 의의

복구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다. 단기적, 임시적인 응급복구와 장기적, 항구적인 원상복구 또는 개량복구의 형태가 있다. 단기적인 응급복구는 이재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식량, 식수, 비상구호품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또한, 구조적인 복구 외에 사망 또는 부상 피해자 및 유가족과 재난 대응활동에 참여한 공무원의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미국 NIMH(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지원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5][6].

이 같은 복구 단계에 속하는 구체적인 활동에는 생존 지원 체계인 전력망 수리, 임시가옥·식량·의복 제공 등이 포함된다[7]. 그리고 복구 단계에서 활동하는 주체로는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의 조직을 예시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 공동으로 기능을 협조할 때 효율적으로 복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효과적인 복구가 가능하다[8].

복구 단계와 관련하여 Settle은 어떤 재난이든 간에 재난 발생은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재정적 위기를 야기한다는 점을 환기시켜주고 있다[9]. FEMA 통계에 의하면 1974년 4월 1일 부터 1983년 9월 30일까지 주정부 지사들에 의해 요청된 긴급 재난구조자금 요청 중에서 단지 59퍼센트만이 연방정부에 의해 승인되었고, 41퍼센트의 요청이 기각되었다. 긴급 재난구조자금 요청이 기각된 41퍼센트 지역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즉, 재난이 발생함과 동시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부동산의 자산가치는 하락하였고, 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에,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어떠한 재정 위기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았기 때문이다.

대비단계와 대응단계의 활동은 재난 유형별에 따라서, 즉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따라 차이가 있다할 지

라도, 이들 모두에 있어서의 복구과정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ubin은 1980년대 초 재난 복구과정에 있는 14개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에 기초하여 성공적인 복구와 연관된 주요 구성요소들을 개관하고 성공적인 복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복구에 필수적인 주요 요소로 개인적 리더십, 활동 능력, 활동 내용에 대한 지식을 예시하면서, 효과적인 복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10]. 첫째, 해당 지방정부가 지니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재정적 및 기타 자원의 지원 확보 방안에 대해 친숙해야 한다. 둘째, 공공관리자들은 해당 지역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복구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May는 복구활동의 집행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난 구호정책(disaster relief policy)의 문제점을 경제적 문제, 조직상의 문제, 정부간 및/또는 전달 문제의 세 가지 차원에서 지적하고 있다[11]. 먼저, 경제적인 문제점으로는 재난구호 경비의 증가, 손실액과 지원액 사이의 격차, 재난별 구호 지급액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조직상의 문제로는 자금지원의 우선순위와 예상 사이의 혼돈을 가져오는 연방정부 조직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셋째, 정부 간 및 전달 문제로는 구호 지급액에 대한 주정부와 연방정부간의 갈등 문제와 주정부 지원 능력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세 가지의 대안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틀은 첫째, 연방정부로 하여금 복구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연방정부로 하여금 총액 보조금을 통한 재해 구호 재정지원 역할을 하게 하는 동시에, 재난구호 활동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이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연방정부는 민간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총괄재해 보험(all hazards insurance)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III. 재난복구단계의 유형화 및 활동 내용

복구는 재난피해 지역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초

기 재난발생 직후 동안 최소한의 운영수준에 요구되는 필수 생명유지 장치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복구는 재난순환(disaster cycle)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단계이다. 즉, 복구는 정상상태로의 복원, 재건축, 복구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구단계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공동이용인력들은 일상적으로 재난대응 단계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수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재난복구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2].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의 발생에 대한 시계열적 순서에 대한 재난관리 행정의 단계인 재난의 예방과 대비 계획, 대응, 복구 등의 4단계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복구과정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재난 지역의 선포 및 지원, 인적재난과 국가기반재난의 경우 재난합동조사단 파견,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 재난발생시 긴급구조 활동 및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자 및 긴급구조에 종사한 민간인 등이 부상·사망한 경우 치료 및 보상, 재난 상황의 기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 구체적인 재난피해 복구는 자연재해대책법이나 각 주무부처별 개별법에 의하여 실시된다[13].

이러한 복구 단계의 다양한 국면들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11]; 첫째, 비상대책 기간(emergency period)이다. 비상대책 기간에는 탐색·구조 활동, 재난피해자 구호, 그리고 필수 접근로의 잔해물(debris) 제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상대책 기간(emergency period)은 재난 직후를 포함하고 직접 손실에 대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14][15]. 둘째, 복원 기간(restoration period)이다. 복원 기간은 파손된 공공시설과 주택을 수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복원 기간(restoration period)은 비상대책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주요 서비스들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14][15]. 셋째, 재건 기간(reconstruction period)이다. 재건 기간 동안에는 파괴된 시설들과 건물들이 최소한 재난 이전 상태로 재건축 되며, 재건 기간은 다시 대체재건 기간과 개발재건 기간으로 구분된다. 이 때, 대체재건 기간

(replacement reconstruction period)은 주식 자본(capital stock)의 새로운 설립, 사회·경제적 활동의 재단 이전 수준 복귀 활동이 이루어진다[14][15]. 그리고 개발재건 기간(developmental reconstruction period)은 주요 재건과 미래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14][15]. 연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주로 “비상대책” 기간의 후반부와 전체 “복원” 기간을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즉각적인 탐색·구조 활동과 여타의 다른 즉각적인 비상대책 활동들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 다룬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복구과정을 시작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복구 계획과 의사결정이 지방 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6].

복구는 재난이 끝나갈 때 시작하고 피해지역이 정상 상태로 되돌아올 때까지 지속된다. 몇몇 사례에서, 복구 기간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당면한 목표는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복구하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은 상·하수도, 전력, 연료, 정보통신, 그리고 교통·수송 체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해당 지역의 삶의 질을 재난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복구단계의 활동으로는 복구상황의 점검 및 관리, 피해 파악 및 긴급 지원, 재난 발생의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있으며, 세부적인 활동으로는 중·장기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의 우선순위 결정, 복구 장비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복구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피해상황의 집계, 긴급 지원 물품의 제공, 피해자 보상 및 배상 관리, 재해 발생 원인 및 문제점 조사, 개선안의 마련 및 유사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 피해 유발 책임자 및 책임기관에 대한 법적 처리 등이 있다[17].

이러한 복구 대책은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모두 포함한다[18]. 단기 대책(short-term measures)에는 구호와 재활, 장기 대책(long-term measures)에는 재건이 포함된다.

먼저, 단기 대책을 살펴보면, 구호(relief)와 재활(rehabilitation) 활동은 일상적으로 피해 영향지역에의 접근을 위한 잔해 제거, 경제 활동의 재개, 정부 서비스의 회복, 이재민을 위한 주택, 의복, 식량 공급 활동 등

이 있다[18]. 기본 서비스의 복원으로 이어지는 단기 활동은 잔해물 제거와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의 수리 등과 같은 전술적 수준 활동(tactical level activities)이다. 초점은 지역사회 서비스의 거의 정상수준으로의 복원에 있다. 주요 복원 요소는 개인 및 공공시설 지원을 위한 연방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으로서, 단기 복구 전략은 건축물 조사, 교량과 도로 등의 구조적 평가 등과 같은 상세한 손실평가와 연방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조화를 이루는데 있다[15].

다음으로, 장기 대책인 재건(reconstruction) 활동에는 첫째, 건물, 도로, 교량, 댐과 같은 주요 구조물의 재건축, 둘째, 지역 경제체계의 재활성화 활동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18]. 이러한 장기 복구는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잠재적 영향으로 인해 사실상 전략적이다. 예방 단계와 마찬가지로, 장기복구 전략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수용이 필요하다. 하나의 전략을 재난 후에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장기복구 전략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응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이타주의(altruism)와는 반대로, 복구 기간은 우선순위 상충, 재해구호의 불공평,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비난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는 정상상태로의 신속한 복귀를 강조하게 된다. 이는 신속한 재건축을 실시하는데 대한 장애물, 예를 들면 예방 방법에 대한 공공의 합의 절차를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역사회는 재난 이전 상태를 복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구의 초점은 지역사회를 이전 상태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15].

복구 기간 동안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원은 지역사회의 외부에서 나온다. 일부는 민간조직과 지방정부에서 나오지만, 대규모 재난에서의 대부분 자원은 중앙정부로부터 나온다[18].

IV. 복구 계획

복구 활동은 재난 영향의 직후에 시작해서 장기간동안 연장된다. 복구 조치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물리적 부분을 적어도 재난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한편, 가능하다면 개선하는데 목표가 있다.

전통적으로 복구는 단기 조치 대 장기 조치의 관점에서 생각되어 왔다. 단기적으로는 구호와 재활(relief and rehabilitation) 조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재건(reconstruction) 조치로 분류되어 왔다[8]. 단기 복구(short-term recovery)는 대응과 겹치게 되고 “탐색과 구조, 손실 평가, 공적 정보, 임시 주거지, 수도·가스·전기 등의 공공시설 복구, 잔해물 제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단기 복구는 기부금품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장기 복구(long-term recovery)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생존이라는 기본적인 차원들, 즉 항구적인 주거지, 경제적 조건, 환경, 도로와 교량과 같은 기반시설, 물·전력·전화와 같은 라이프라인을 다룬다. 각각의 차원은 장기 복구 기간을 통해 움직이는 개인적 역량과 집합적 역량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심리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비록 복구가 재난관리의 생애 주기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별개의 단계라고 할지라도, 복구 단계는 예방 및 완화, 대비, 그리고 대응 단계 동안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복구가 더 쉬워질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대응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복구노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파괴된 건물의 벽돌을 한쪽으로 잘 치워 놓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를 복원하고 대규모 쓰레기 매립을 줄이는 것보다 쉽게 해 줄 것이다 [19].

주요 재난으로부터의 복구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많은 갈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복구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개발된 계획에 기초할 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인 것이다. 이는 계획이야말로 조직간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이며 공유된 목표를 개발하는 노력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에서는 모든 기관에 대한 동일한 계획 기간의 사용,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에 의한 연합계획,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비교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계량화된 산출물의 개발, 재난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통합된 계획, 참여기관간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다른 기관의 계획을 검토하는데 사용할 구체적인 지침, 모든 참여기관을 위한 조정 기준 등이 요구된다[20].

이러한 사전 복구 계획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8].

첫째, 재난 복구 조직을 분명히 정하는 한편, 토지 사용과 건물 공사업체, 사업집단, 그리고 인접 협회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들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임시 주거지의 위치 선정이다. 이는 일상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어려운 쟁점이기 때문에 재난 발생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놓는 것이 복구를 신속하게 해준다.

셋째, 중요한 과업의 수행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손실 평가, 출입 금지, 잔해물 제거, 구역 재설정, 서비스 재개, 임시 수리 허가, 그리고 허가 절차 등이 그것이다. 이들 과업은 해당 지역이 재건되기 전에 완료되어야만 한다.

넷째, 피해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계약자 허가 부여와 모니터링, 소매가격의 통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행정지도와 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재난 직후에는 온갖 수많은 업무로 인해 압도되기 때문에 사전에 인근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지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기술자, 건축가, 계획 설계자 등의 훈련받은 봉사자들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역사적 유물·유적이 있는 장소에서의 복구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손상된 구조물의 해체와 복원에 사용될 재료 등에 대한 제약과 같은 특별한 쟁점들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복구 기간이야말로 재난 피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목표를 복구 계획 과정에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인식해야 한다.

V. 결론

재난 복구는 재난이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지역이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장기적인 활동 과정인 동시에, 초기 회복기간으로부터 그

지역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구는 주먹구구식 피해조사와 임기응변식 복구, 영터리 복구,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방시설, 복구의 지연, 피해 재발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복구의 의의와 활동, 계획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 복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재난 복구의 유형화와 사전 복구 계획의 설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복구 단계는 비상대책 기간, 복원 기간, 재건 기간, 개발재건 기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구 대책 또한 구호와 재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단기 복구 대책과 재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복구 대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전 복구 계획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첫째, 재난 복구 조직을 분명히 정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임시 주거지의 위치를 선정해 놓아야 한다. 셋째, 손실 평가, 출입금지, 잔해물 제거 등 중요한 과업의 수행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계약자가 부여와 모니터링, 소매가격의 통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역사적 유물·유적이 있는 장소에서의 복구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구 기간이야말로 재난 피해 완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목표를 복구 계획 과정에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W. J. Petak,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5(Special Issue, Jan.), pp.3-7, 1985.
- [2] 박동균, 박창근, 송철호, 오재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9.

- [3] D. McLoughlin,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5(Special Issue, Jan.), pp.165-172, 1985.
- [4] 유현정, 이재은, 노진철, 김겸훈, *재난을 바라보는 다섯가지 시선*, 서울: 대영문화사, 2009.
- [5] D. M. Hartsough, "Stress and Mental Health Interventions in Three Major Disasters," *Disaster Work and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Control of Stress among Workers*, (M.D.: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Vol.13, p.8, 1985.
- [6] 이재은, *재난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6.
- [7] W. L. Waugh, "Regionalizing Emergency Management: Counties as State and Loc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54, No.3, pp.253-258, 1994.
- [8] R. W. Perry,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Evacuating Threatened Populations*, CT: JAI Press, Inc., 1985.
- [9] A. K. Settle, "Financing Disaster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5(Special Issue, Jan.), pp.101-106, 1985.
- [10] C. B. Rubin, "Recovery from Disaster," Thomas E. Drabek, and Gerard J. Hoetmer. eds.,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1991.
- [11] P. J. May, *Recovering from Catastrophes: Federal Disaster Relief Policy and Politics*, CT: Greenwood Press, 1985.
- [12] R. Sylves, *Disaster Policy and Politics: Emergency Management and Homeland Security*, Washington, D.C.: CQ Press, 2008.
- [13] 문현철,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

- 위기관리논집, 제4권, 제1호, pp.84-104, 2008.
- [14] J. E. Haas, R. W. Kates, and M. J. Bowden, *Reconstruction Following Disaster*,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77.
- [15] L. G. Canton, *Emergency Management: Concepts and Strategies for Effective Programs*, N.J.: John Wiley and Sons, Inc., 2007.
- [16] G. D. Haddow, Jane A. Bullock, and Damon P. Coppola. *Introduction to Emergency Management*, 3rd. ed. New York: Elsevier Inc., 2008.
- [17] 이재은,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Jemmings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3권, 제1호, pp.62-74, 2007.
- [18] M. K. Lindell, Carla Prater, and Ronald W. Perry, *Introduction to Emergency Management*, N.J.: John Wiley and Sons, Inc., 2007.
- [19] B. D. Phillips and David M. Neal. Recovery. William L. Waugh, Jr. and Kathleen Tierney,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2nd ed., Washington, D.C.: ICMA Press, 2007.
- [20] 조종묵, 류상일, 이재은, “재난관리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1호, pp.107-124, 2011.

저 자 소 개

이재은(Jae-Eun Lee)

정회원



- 1989년 2월 :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문학사)
 - 1991년 2월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1993년 2월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11년 현재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위기관리, 조직이론, 정책집행론